

1 국가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개요

1.1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개요

요약/인용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은 필리핀 노동법(주로 제 IV권), 산업안전보건법(OSHS) 1978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관장을 받는다. 노동고용부(DOLE) 및 관련 정부 기관들에서 위험 요소 별 세부 지침,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령, 시행령을 제정한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필리핀 노동고용부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프로파일

필리핀 노동 조사 국가 프로파일

2.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예외

2.1 신체적, 정신적 보건의 포함되는 보건, 안전

요약/인용

“건강이란 근로자가 행복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의미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S 1002(6))

2.2 근로자의 정의

요약/인용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의해 업무에 종사하도록 채용, 허용된 자를 의미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S 1002(2))

2.2.1 특수 근로자

2.2.1.1 이주 근로자

요약/인용

노동법 제II권은 비거주민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필리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내국인/외국인 사용자는 노동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법률의 목적은, 국가 개발 목표와 모든 근로자들의 전인적 자기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합되도록, 모든 근로자들에게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부상, 질병,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인적 자원을 보존하고 생명 및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비고/의견

이주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제 II권)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1(1), 1002(2))

2.2.1.2 가사 근로자

요약/인용

가사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공화국 법 10151호에 따라 개정되고 법률 번호가 재부여된 가사근로자법은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3장(가사 도우미 고용)을 폐지하고 대신한다.

“본 법률의 목적은, 국가 개발 목표와 모든 근로자들의 전인적 자기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합되도록, 모든 근로자들에게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부상, 질병,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인적 자원을 보존하고 생명 및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비고/의견

가사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1(1), 1002(2))

가사근로자법(공화국법 10361호)

2.2.1.3 재택 근로자

노동법 제IV권은 재택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의 목적은, 국가 개발 목표와 모든 근로자들의 전인적 자기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합되도록, 모든 근로자들에게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부상, 질병,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인적 자원을 보존하고 생명 및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비고/의견

재택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제 IV권)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1(1), 1002(2))

2.2.1.4 자영업자

2.3 사용자의 정의

요약/인용

“사용자란 법인과 자연인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사용자”에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포함되며,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 및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 또는 조직도 포함된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제 IV권, S 167(6))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2)

2.4 제외되는 산업 분야

2.4.1 농업

요약/인용

“본 법률의 목적은, 국가 개발 목표와 모든 근로자들의 전인적 자기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합되도록, 모든 근로자들에게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부상, 질병,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인적 자원을 보존하고 생명 및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비고/의견

농업도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1(1))

2.4.2 건설

요약/인용

건설 산업의 산업안전보건을 관장하는 지침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건설업산업안전보건지침(D.O. 13호, 1998)

2.4.3 서비스업

요약/인용

“본 법률의 목적은, 국가 개발 목표와 모든 근로자들의 전인적 자기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합되도록, 모든 근로자들에게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부상, 질병,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인적 자원을 보존하고 생명 및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비고/의견

서비스업도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1(1))

2.4.4 공공부문

요약/인용

“사용자”에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포함되며,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 및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 또는 조직도 포함된다.

비고/의견

공공부문도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제 IV권, S 167(6))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2)

2.4.5 기타

요약/인용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업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들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1989, 1003.03; 부 관보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 개정)

국가 경제개발국에서 “광업”으로 분류한 시설물 또는 사업장에서 광산 안전, 광물 보존, 오염과 관련하여,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범위 내에서 광산 설비, 지표면, 지하의 안전에 관한 권리자의 행위에는 이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1003.04)

선박 건조, 수리, 해체 산업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 지침이 적용된다.

참고

부두근무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3(3)(4))

노동고용부 부 관보 제2호 산업안전보건 기준 일부 개정

선박건조수리해체산업안전보건지침(D.O. 1호, S 2009)

2.5 업무상 사고의 정의

요약/인용

“업무상 사고”란 사람의 부상, 재산 손해, 업무 중단 또는 혼선 초래 여부와 무관하게 계획되지 않고 예상할 수 없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업무상 부상”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 중 발생한 사람의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을 의미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2(8)(9))

2.6 업무상 질병의 정의

요약/인용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근무 외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환경 요인, 특정 공정, 거래,

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2(10))

2.6.1 업무상 질병 목록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개발연구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정된 업무 상 질병 및 보상 대상 질병의 목록을 제공한다.

<http://www.iohsad.org/list-occupational-and-compensable-diseases>

2.6.2 업무상 질병이 아닌 기타 질병에 대한 보상 체계

3 산업안전보건 행정 및 집행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3.1 산업안전보건 관할 정부 기관

요약/인용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고용부 장관은, 모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명령을 통해 의무적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162조)

“노동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과 업무 환경 조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여 잠복 질병을 찾고, 어떤 근로자도 업무 또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신체 기능, 기대 수명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법, 기술,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시행해야 한다.”

(163조)

“노동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 보건 분야 인력의 수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64조)

“위치와 상관 없이 모든 시설물 및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법률, 규칙, 기준 시행 및 행정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고용부에 있다. 단, 노동고용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치시(chartered city)의 경우, 노동고용부가 정한 국가 기준에 따라,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산업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65(a)조)

“노동고용부 장관은, 모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명령을 통해 의무적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165(b)조)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필리핀 노동법 162조에 따라 노동고용부에 부여된 권한으로, 모든 관련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반포한다.”

비고/의견

노동고용부(DOLE)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노동고용부는 노동 및 고용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행정부 내 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중앙 정부 부처이다.

노동고용부는 공식, 비공식 경제, 민간, 공공 부문의 4,000만 근로자들로 구성된 필리핀의 노동인구를 행

정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도 노조, 사용자/근로자 단체, 비정부기구(NGO), 정부 기관, 학계, 기타 이해당사자, 국제기구(ILO, IOM, UNDP, UNICEF 등), 필리핀 해외 근로자(OFW)가 근무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도 노동고용부의 행정 고객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노동고용부는 16 곳의 지역 사무소, 83 곳의 현장 사무소, 4곳의 위성 사무소, 38 곳의 해외 사무소, 6개의 국, 7개의 참모 기관, 11 개의 청을 산하에 두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감독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고용부에는 총 9,12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3년 노동고용부의 전체 예산은 80억 8300만 페소이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162-165조)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1002(10))

필리핀 노동고용부

3.1.1 목적, 역할, 기능

요약/인용

노동고용부는 노동 및 고용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행정부 내 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중앙 정부 부처이다.

참고

필리핀 노동고용부

3.1.2 책임자 및 조직 구성

요약/인용

노동고용부 조직은 홈페이지(<http://www.dole.gov.ph>) 참고

참고

필리핀 노동고용부

3.2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및 기관

요약/인용

국가 산업안전보건연구센터는 산업안전보건센터(OSHC)이다.

참고

시행령 규칙 및 규정 제 307호 (S 2)

3.2.1 목적, 역할, 기능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센터(OSHC)의 업무에는 모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방 조치(일차, 2차, 3차 예방)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센터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 훈련, 정보 전파, 기술 서비스를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다.

산업안전보건센터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 및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 업무 상 부상 및 질병 방지 및 감소

2. PD 626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목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 지원
3. 산업안전보건 기준 수립 및 집행 지원

참고

시행령 규칙 및 규정 제 307호 (S 2(a))

3.2.2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책임자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센터에는 원장, 부원장, 기술직 근로자, 행정직 근로자를 둔다.

참고

시행령 규칙 및 규정 제 307호 (S 4, S 5)

3.2.3 예산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센터는 근로자보상위원회 산하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예산 규칙을 따른다.

3.3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센터는 1987년, 산업 사고 및 질병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령 제 307호를 통해 설립되었다.

비고/의견

산업안전보건센터가 시행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 참고:

<http://www.oshc.dole.gov.ph/10/PROGRAMS>

참고

시행령 규칙 및 규정 제 307호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

3.3.1 국가 산업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 종합 산업안전보건계획(2006-2010)의 행동 목표를 “노동고용부의 권한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센터, 노조, 사용자, 기타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계획의 비전을 조화로운 산업안전보건 정책, 프로그램, 표준 업무 절차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고/의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http://www.oshc.dole.gov.ph/39/>

참고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

4 근로자 및 근로자 외의 사람을 보호할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4.1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할 의무

요약/인용

본 기준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는 사망, 질병,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 환경을 자신의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S 1005(a))

4.2 근로자 외의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

4.3 사업장을 공유하는 둘 이상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

4.4 근로자의 업무 관련 건강 검진

요약/인용

기존 검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상 질병 및 비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요소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례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S 1967.03)

4.4.1 감시가 필요한 특정 위험 요소

요약/인용

근로자가 천연 비료, 납, 수은, 황화 수소, 이산화황, 나이트로글리콜, 기타 그와 유사한 물질에 노출된 경우, 그에 따른 적합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S 1967.07/ S 1955.04(7))

4.5 근로 환경 및 근로 방식에 대한 감시

요약/인용

사용자는 산업보건 서비스, 보건 프로그램,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961.02, S 1961.03, S 1966.01, S 1077.01)

4.6 개인 보호 장비 제공 의무

요약/인용

사용자는 위험 요소의 성격 상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들에게 눈, 얼굴, 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 보호 설드, 가림막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하게 유지보수할 책임을 진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81.01, S 1081.03)

4.7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을 보장할 의무

요약/인용

“사용자는 호흡용보호구의 적절한 사용법과 한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훈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위험 물질을 다룰 때 항상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83.04(2), S 1093.02)

4.8 응급 처치 및 복지 시설 제공 의무

4.8.1 응급 처치

요약/인용

사용자는 응급 처치 및 긴급 치료를 포함한 산업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충분한 수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응급 처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S 156)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961.03(1i))

4.8.2 위생 시설

요약/인용

사용자는 남성 및 여성 근로자를 위해 화장실을 제공해야 하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탈의실과 샤워실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S 156) (S 132)

4.8.3 음용수

4.8.4 휴식 및 식사 공간

5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원칙 및 관행에 따른 사용자의 예방 조치 수립 의무

5.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성 요소

5.1.1 보건 안전 관련 책임 및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책 또는 계획

요약/인용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본 기준에 부합되는 서면 안전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채택할 1차적인 의무가 있으며, 안전 정책에는 사용자의 책임과 위임 받은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5(a))

5.1.2 안전 보건 담당자 임명

요약/인용

사용자는 본 기준에 따른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자신의 사업장에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961(1))

5.1.3 서면 위험 평가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실무자는 적어도 분기별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시행 실태를 평가해야 하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34.03)

5.1.4 안전한 근로 체계 및 절차

요약/인용

사용자의 주요 일반 의무

(a) 위험 요소가 없는 사업장 환경 조성

(b) 근로 안전 수칙을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설명;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d) 승인된 장치 및 장비만 사용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05(1))

5.1.5 위험성에 대한 훈련 및 정보

요약/인용

“근로자는 위험 물질 배출, 오염 제거, 오염 지역으로부터 질서 있게 대피하는 절차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건물의 경우, 상근 근로자에 대한 화재 대피 훈련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건축 현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지시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S 1093.09, 1948.03(3))

건설업산업안전보건지침(D.O. 13호, 1998) (S 12.3)

5.1.6 예방 조치 성과 검토 및 평가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실무자는 적어도 분기별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시행 실태를 평가해야 하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961(1))

5.1.7 보건 안전 문제에 관한 근로자와의 협의

5.2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 또는 기준을 시행할 의무

요약/인용

6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지원을 확보할 사용자의 의무

6.1 산업안전보건 전문 기관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실무자는 적어도 분기별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시행 실태를 평가해야 하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961(1))

6.1.1 보건 및 안전 전문가의 조언 및 지원 확보

요약/인용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본 규정에 따른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는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규정은 정부 기관, 정부 기관의 모든 정치적 하부 조직,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영리/비영리 시설에 적용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규정 1961(1), S 1961.01(1))

6.1.1.1 전문가 또는 전문 서비스 자격 요건

요약/인용

모든 안전 컨설턴트 및 컨설팅 기관은 관계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관할 지역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컨설턴트는 수 년간의 훈련 및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34.01)

6.2 산업안전보건 실무자 임명

요약/인용

적어도 아래 규정된 수 이상의 감독관 또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안전 책임자로 임명되어야 한다. 안전 책임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업종, 본 기준 규정 1013에 규정된 위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33.4(a)/ S 1047(2))

6.2.1 산업안전보건 실무자 임명 필요한 사업장 규모 기준

요약/인용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200인 이하: 1인의 비상근 안전 책임자
200인 초과, 1000인 이하: 1인의 상근 안전 책임자
1000인 초과 시, 1000인 마다 1인의 상근 안전 책임자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
1000인 미만: 1인의 비상근 안전 책임자
1000인 초과 시, 1000인 마다 1인의 상근 안전 책임자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33.2)

7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7.1 자신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요약/인용

근로자는 “본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수립한 안전 수칙 및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사고 위험 요소를 시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 및 행동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6(1)(2))

7.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요약/인용

근로자는 자기 자신 및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 기준에 따라 제공된 모든 안전 장치와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05(3))

7.3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관리자의 의무

7.4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고위 간부의 의무

7.5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자영업자의 의무

7.6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

요약/인용

근로자는 “본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수립한 안전 수칙 및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사고 위험 요소를 시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 및 행동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6(1)(2))

7.7 위험성 및 예방 조치에 대해 문의할 권리

7.8 위험한 상황을 피할 권리

7.9 위험하지 않은 일로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

7.9.1 위험하지 않은 일로 재배치되지 않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 사직할 권리

8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협조, 협력

8.1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협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센터장을 의장으로 하는 노동고용부 기관협력위원회는 사업장 및 시설물의 HIV 및 에이즈 예방, 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고용부 지역 사무소는 각자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업장 내 HIV 및 에이즈 예방, 관리 문제에 관한 기술적 조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참고

사업장 내 HIV, 에이즈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시행 지침(D.O. No. 102-10 S.2010). (II-E)

8.1.1 목적, 역할, 기능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센터장을 의장으로 하는 노동고용부 기관협력위원회는 사업장 및 시설물의 HIV 및 에이즈 예방, 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고용부 지역 사무소는 각자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업장 내 HIV 및 에이즈 예방, 관리 문제에 관한 기술적 조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참고

사업장 내 HIV, 에이즈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시행 지침(D.O. No. 102-10 S.2010). (II-E)

8.1.2 구성 및 의장

8.2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할 사용자의 의무

요약/인용

기존 사업장의 경우 본 기준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규 사업장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달 이내에, 모든 사업장에 보건안전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다음 해 1월부터 시작해서 매년 1월에 보건안전 위원회를 재조직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1)

8.3 보건 안전 담당 근로자 대표자를 선정할 근로자의 권리

요약/인용

보건안전 위원회에는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3인 이상의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노조 가입자여야 한다.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단순 다수결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2)

8.3.1 보건, 안전 근로자 대표가 필요한 인력 규모 기준

요약/인용

4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보건안전 위원회는 4명의 근로자로 구성된다. 4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보건안전 위원회에 총 3명의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2)

8.3.2 보건 안전 근로자 대표의 자격 조건

8.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역할, 권리, 권한

8.4.1 사업장 조사권

8.4.2 산업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요약/인용

보건안전 위원회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검사, 사고 조사,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다.

비고/의견

이는 보건안전 위원회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3.01)

8.4.3 인터뷰 참관권

8.4.4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

8.4.5 조사관과 동행할 권리

8.4.6 시설물 사용권

8.4.7 안전보건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급 근무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8.4.8 시정 통지권

8.4.9 사용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

8.4.10 위험한 업무의 중단을 지시할 권리

8.5 사외 근로자 대표의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문제 개입권

8.5.1 사업장 출입권

8.5.2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한 조사권

8.5.3 근로자와 협의할 권리

8.5.4 근로자에게 조언할 권리

8.5.5 강제 조치 개시권

8.6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요약/인용

기존 사업장의 경우 본 기준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규 사업장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달 이내에, 모든 사업장에 보건안전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다음 해 1월부터 시작해서 매년 1월에 보건안전 위원회를 재조직해야 한다. 안전보건 위원회는 의장, 감독관, 근로자 대표, 안전 책임자, 필요한 경우 사내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2)

8.6.1 근로자 대표의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

요약/인용

보건안전 위원회에는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3인 이상의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노조 가입자여야 한다.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단순 다수결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2)

8.6.2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립 조건

요약/인용

4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보건안전 위원회는 4명의 근로자로 구성된다. 4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보건안전 위원회에 총 3명의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2)

8.6.3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목적, 역할, 기능

요약/인용

안전보건 위원회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장의 사고 예방 프로그램 기획, 개발
- (2) 사업장 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 프로그램 및 정부 규칙에 따른 사고 방지 노력 감독
- (3) 최소 월 1회 안전 회의 소집
- (4) 검사, 사고 조사, 프로그램 시행 보고서 검토
- (5) 관리자에게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관한 보고서 제출
- (6) 본 기준의 집행과 같은 정부 당국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공
- (7) 근로자 안전 훈련 실시 및 감독
- (8) 재난 대비 계획 개발 및 유지, 민방위청의 시설물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른 재난 시 대처에 필요한 비상 서비스 조직 구축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3.01)

8.6.4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업무의 기록

요약/인용

안전보건 위원회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관리자에게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3.01)

8.6.5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 공유

요약/인용

안전보건 위원회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관리자에게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43.01)

8.7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무적 훈련

8.8 보복으로부터 보호

8.9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및 의무 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9 구체적인 위험 요소 또는 위험

9.1 생물학적 위험 요소

9.2 화학적 위험 요소

9.2.1 취급, 보관, 라벨링, 사용

요약/인용

합동행정명령의 목표는 분류 기준, 라벨링, GHS의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요구 조건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공정 또는 환경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흡수, 흡입, 물리적 접촉으로 부상, 신체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또는 방사선 관련 위험 요소에 근로자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들에게 눈, 얼굴, 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 보호 설드, 가림막을 제공해야 한다.
(S 1081.01)

위험 물질이 들어 있는 모든 용기에는 적절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는 다른 여러 정보와 함께 상품명과 물질의 화학적 명칭이 표기되어야 한다.
(S 1093.04(1))

실린더에는 내용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a. 화학 기호를 실린더 외부 금속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b. 화학적 명칭과 상품명을 스텐실, 라벨, 도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S 1173.03(1))

비고/의견

화학물질 안전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안전보건 규칙 및 규정
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S 1081.01, 1093.04(1), 1173.03(1))

9.2.2 화학물질 제조, 공급, 수입자의 사용자 안전,보건 보호 의무

9.2.3 살충제

요약/인용

살충제와 농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950)

9.3 인간공학 관련 위험 요소

요약/인용

산업보건 서비스가 산업보건, 위생, 인간공학 분야에서 필요한 조언, 정보, 훈련을 제공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961.03(1h))

9.4 물리적 위험 요소

9.4.1 이온화 방사선

요약/인용

장비 차폐, 단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방사선, 증기 및 고온 파이프, 고온의 기계 또는 장비로 인한 과도한 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참고

필리핀 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방사선방호기준

9.4.2 진동 및 소음

요약/인용

“모든 동력 보일러에는 진동 (...) 으로부터 안전한 증기 압력 게이지를 장착해야 한다.”
(S 1163.06)

진동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바닥 가장자리는 기초 구조물로부터 적어도 25mm 이상 이격되어 있어야 한다. 틈새는 방수 단열재로 메워야 한다.
(S 1183.01)

노동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소음 허용치를 포함한 각종 허용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S 1071(3))

소음 허용치란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청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음압을 의미한다.
느린 반응속도로 설정된 표준 소음계로 측정했을 때 본 기준 8b에 규정된 음압을 넘어서는 소음에 근로자가 노출된 경우, 실현 가능한 행정적, 공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음 방지 대책으로 소음 수준을 허용치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소음을 허용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청각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S 1974.01)

표 8b 소음 허용치
(S 1074.02)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S 1163.06, 1183.01, 1071(3), 1974.01, 1074.02)

9.4.3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

요약/인용

특정 상황에서 비계, 호이스트, 벨트 사용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제한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414.05(6), S 1414.05 (8)(d)(e)(f), S 1415.11)

9.4.4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

요약/인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또는 조치 규정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84.01, S 1086.01, S 1100.03, S 1121)

9.4.5 사업장 시설물 유지 관리 부족으로 인한 위험

요약/인용

건물, 마당, 기계, 장비 청결 유지, 정기적인 쓰레기 처리, 공정, 작업, 저장, 자재 정리를 통해 사업

장을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S 1060.01(4))

자연광
천창 및 창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S 1975.02(3))

공기 공급
밀폐된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시간당 20~40m³(700~1400ft³)의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정적인 업무의 경우 시간당 4회, 동적인 업무의 경우 시간당 8회 실내 공기를 완전히 환기시켜야 한다.
(S 1976.02(1))

청결
작업 공정 중 생성되어 방출되는 먼지, 가스, 수증기, 미스트는 작업 공간의 대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발생 지점에서 제거해야 한다.
(S 1076.03(1))

비고/의견

바닥, 구역, 시설, 장비의 청결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은 매우 많다.
위 규정은 그 중 몇 가지 예시일 뿐이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S 1060.01(4), 1975.02(3), 1976.02(1), 1076.03(1))

9.4.6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

요약/인용

공기 공급 부족, 정체, 오염, 외풍,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온도,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막기 위한 자연적, 인공적 조치를 통해 적절한 실내 환경을 조성, 유지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76.01, S 1076.05, S 1077.03)

9.4.7 화재 위험

요약/인용

다양한 관련 조항이 규정된 화재 예방 및 관리 규칙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규칙 1940)

9.4.8 흡연

요약/인용

작업장 내에서는 식음료 반입, 준비, 취식,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93.13)

9.4.9 석면

요약/인용

석면 수입 및 제조에는 화학물질관리명령(석면)이 적용된다. 이 명령에는 석면 함유 자재 및 폐기물의 필리핀 내 취급, 저장, 폐기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관계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 (1) 수입업자
- (2) 제조업자
- (3) 운송업자
- (4) 산업 시설 소유자/운영자, 계약업자
- (5) 조선업자
- (6) 폐기물 처리 서비스업자
 - (i) 폭파 계약업자(화물트럭, 운송, 폐기)
 - (ii) 선박해체업자
 - (iii) 폭파 또는 리노베이션 업체 소유자/운영자

(1) 종합 목적: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석면 사용 및 폐기 관리 및 규제

(2) 세부 목적:

- (a) 석면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 인식 확대
- (b) 석면 원자재, 제품,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체계 개발
- (c) 석면 수입, 제조, 취급, 저장, 폐기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 수립
- (d) 특정 종류의 석면, 석면 함유 자재 및 제품 사용 제한 규정 수립
- (e) 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준수 확보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립

참고

화학물질관리명령(석면) 2000

9.4.10 나노 기술 관련 위험

9.4.11 사업장 내 HIV 감염

요약/인용

사업장 내 HIV 및 에이즈 예방, 관리 프로그램 시행 지침이 있다.

참고

사업장 내 HIV, 에이즈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시행 지침(D.O. No. 102-10 S.2010). (II-E)

9.5 심리사회학적 위험 요소

9.5.1 심리사회학적 위험

요약/인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사업장 내 약물 금지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 지침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961.02(1a), S 1965.06, 277페이지 이하)

9.5.2 직장 내 폭력

9.6 기타 위험 물질

요약/인용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위험 물질을 제조, 취급, 사용하거나, 인화성, 자극성, 독성 분진, 파이버, 가스, 미스트, 수증기가 건강에 유해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에는 위험 물질에 관한 규칙 1090조가 적용된다. governor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90)

9.7 기계

9.7.1 기계 및 도구 관련 위험

요약/인용

기계 관련 위험에는 기계 안전과 관련된 챕터와 여러 조항들이 적용된다.

비고/인용

규칙 1200은 기계 안전만을 다루고 있으며, 가드, 필러, 설치 및 제거, 바닥 청결, 인터록, 나무 가드, 작동 부위 안전 가드, 변속 기계 가드, 조속기, 이음 고리, 열쇠, 나사, 테일 로드, 샤프트, 벨트 및 도르래, 컨베이어, 기어, 스프로킷, 작동 및 멈춤 장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146.09 (7b)(7c), 규칙 1200)

9.7.2 기계 설계 및 제조업체의 기계 운용자 안전 및 보건 보호 의무

요약/인용

기계, 기계 부품, 그 밖에 업무 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하는 자는 제품에 필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비고/의견

규칙 1200은 기계 안전만을 다루고 있으며, 가드, 필러, 설치 및 제거, 바닥 청결, 인터록, 나무 가드, 작동 부위 안전 가드, 변속 기계 가드, 조속기, 이음 고리, 열쇠, 나사, 테일 로드, 샤프트, 벨트 및 도르래, 컨베이어, 기어, 스프로킷, 작동 및 멈춤 장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9.7.3 기계 설계, 제조, 수입, 공급자의 기계 정보 제공 의무

요약/인용

기계, 기계 부품, 그 밖에 업무 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하는 자는 제품에 필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비고/의견

규칙 1200은 기계 안전만을 다루고 있으며, 가드, 필러, 설치 및 제거, 바닥 청결, 인터록, 나무 가드, 작동 부위 안전 가드, 변속 기계 가드, 조속기, 이음 고리, 열쇠, 나사, 테일 로드, 샤프트, 벨트

및 도르래, 컨베이어, 기어, 스프로킷, 작동 및 멈춤 장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9.7.4 승인/인증을 받은 공급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할 의무

9.7.5 기계 및 장비 유지 관리

요약/인용

“운송, 기계, 플랫폼:

- a. 건조하지 않은 무연성 파우더 또는 젖은 니트로 화합물을 제외한 폭발성 물질의 운송에 사용되는 트럭과 컨베이어에는 폭발성 물질이 트럭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드/엔드 레일 또는 가드를 장착해야 한다.
 - b. 시설물 관리자는 폭발물 제조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장비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된 경우,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해당 기계 또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c. 모든 위험한 기계 또는 기계 가동부에는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 (S 1146.09(7))

규칙 1200은 기계 가드 설치 및 기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146.09(7), 규칙 1200)

9.7.5.1 적용 대상 장비 목록

9.8 취약한 근로자 보호 규정

9.8.1 임신부 보호

요약/인용

금지 행위 - (a)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2) 여성 근로자를 임신, 임신으로 인한 휴가 또는 근로 제한을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
- (3) 여성 근로자가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9.8.2 수유 중인 여성 보호

9.8.3 특정 직업, 업무에 대한 여성 근로자 배정 제한

요약/인용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는 25kg이 넘는 물건을 들도록 할 수 없다”
(S 1412.07)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는,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업무에 고용되거나 종사할 수 없다.

- (a) 모든 2차 산업 부문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
 - (b) 상업 또는 3차 산업 부문에서 자정에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
 - (c) 농업 부문에서 9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야간 근무
- (130조)

제한/의무

위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심각한 사고,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생명 또는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 또는 임박한 위험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 (b) 기계, 장비, 설비를 사용해서 긴급하게 작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
- (c) 쉽게 변질되는 제품의 심각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작업
- (d) 여성 근로자가 관리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직책을 맡고 있거나 보건 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 (e) 작업 성격 상 여성 근로자의 손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 근로자가 같은 수준의 효율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없는 작업
- (f) 여성 근로자가 시설 또는 사업장 운영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 (g) 노동고용부 장관이 관련 규칙을 통해 예외로 인정한 경우“

(131조)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130, 131조)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412.07)

9.8.4 특정 직업, 업무에 대한 특정 연령 근로자 배정 제한

요약/인용

“수습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59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한 고용할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제한된 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16세 미만의 아동은 광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고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지하 광산에 고용할 수 없다.

(139조)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59, 139조)

10 사고/질병에 대한 기록, 통지, 조사

10.1 업무상 사고, 준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록 및/또는 원인 조사 의무

10.1.1 업무상 사고

요약/인용

사용자는 사고 또는 질병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권한이 있는 조사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공개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54(1))

10.1.2 준사고

10.1.3 업무상 질병

요약/인용

사용자는 사고 또는 질병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권한이 있는 조사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공개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54(1))

10.2 사용자의 업무 상 사망, 부상, 질병을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보고할 의무**요약/인용**

사용자는 1053.2조에 규정된 장애 또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모든 업무 중 사고 또는 업무 상 질병을 지역 노동 사무소 또는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에 손상을 초래했거나 사업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위험한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53)

11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집행**11.1 산업안전보건 조사관 임명****요약/인용**

조사 책임은 노동고용부에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03.01(1))

11.2 산업안전보건 조사관의 권한**11.2.1 사업장 출입권****요약/인용**

“사용자는 노동고용부 장관 또는 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본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자신의 사업장 및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03.01(2))

11.2.2 조사, 시험, 질의권**요약/인용**

“사용자는 노동고용부 장관 또는 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본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자신의 사업장 및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03.01(2))

11.2.3 조사권

요약/인용

“모든 시설물 또는 사업장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본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사고, 업무상 질병, 위험한 상황, 특히 영구적인 중증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국이 환경 오염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장 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 근로자, 노조의 요청으로 조사, 검사, 후속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 조사를 위해서는 지역 노동 사무소 또는 본 기준 규칙 1980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03.01(3))

11.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언을 할 의무

11.3 산업안전보건 조사관의 강제 집행 권한

11.3.1 명령권 또는 통지권

요약/인용

“집행관은 시정 권고와 함께 시정 대상 위험 요소의 중대성 또는 명령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의 준수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03.01(4))

11.3.2 과태료 부과권

11.3.3 인허가 취소 또는 중지 권한

11.3.4 위험한 업무를 중단시킬 권한

요약/인용

집행관은 사업장에서 급박한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지역 사무국에 업무 중단 명령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1989 (S 1012.02(2))

11.3.5 고발 개시 권한

11.3.6 고발 시행 권한

11.3.7 그 밖의 강제 권한

11.4 법원의 제재

11.4.1 법인에 대한 벌금

요약/인용

“사용자의 법률 위반, 안전 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위반, 부상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국가보험기금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소득 지원 수당의 25%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모든 사용자, 특히 본 기준에 정해진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대책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200조)

11.4.2 자연인에 대한 벌금

요약/인용

“사용자의 법률 위반, 안전 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위반, 부상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국가보험기금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소득 지원 수당의 25%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모든 사용자, 특히 본 기준에 정해진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대책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

노동법(대통령령 제 442호, 1974) (200조)

11.4.3 벌금 외의 제재

11.4.4 형사적 책임

11.4.5 징역 기간